

[서식 예] 손해배상(지)청구의 소(저작권 침해)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주식회사

○○시 ○○구 ○○길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지)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소설「◎◎◎」 외 다수의 작품을 출품한 경력이 있는 자로 소설·수필 등 창작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문학가이고, 피고 ◇◇주식회사, 피고 ◈◈◈는 공동으로 서적의 인쇄·복제·알선 및 판매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출판업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가. 원고는 20○○. ○.부터 이 사건 소설「◎◎◎」의 창작을 시작하여 같은 해
 ○. ○. 이를 완성하였고, 20○○. ○○. ○. ◆◆에서 주관하는 ◆◆회에 출품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선하였습니다.
- 나. 피고들은 공동으로 20○○. ○○. ○○.경부터 위 소설을 인쇄·복제하여 상·하권(각 432면) 2권을 제작, 책 1권당 금 ○○원씩 시중에 불법유통 하여판매하고 있는데, 인기가 급상승하여 판매 부수가 ○○○부에 이르고 있습니다.
- 다. 피고들은 이와 같은 인쇄·복제를 함에 있어서 작가인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이 소설을 창작하여 이를 소외 □□□출판사에 의뢰한 상태였고 소외 □□□출판사에서 출판하였더라도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출판대금 ○○○원을 제외한 금 ○○○원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소외 □□□출판사의 지명도 및 판매할 수 있는 유통구조상 피고들이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상회하리라는 것임은 현재의 판매 부수가 이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손해배상금 ○○○원 및 이에 대한 위 저작권침해일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증 명 방 법

1. 갑 제1호증 사진(복제물)

1. 갑 제2호증 출판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증명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0. 0.

위 원고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제 척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용	·인지액: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 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 46259 판결). ㆍ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 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 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고, 저작권자가 그와 같은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일을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이용료를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수 있다 할 것이지만,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구 저작권법 제94조에 따라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등),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5%임)에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함.

지연손해금



※ (1) 관 할

-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